

2021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스마트 시민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할 열정적인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직무		인원(명)	주요업무
계		10	
사무직 (5명)	일반	4	신규사업 보상, 주택관리, 사회공헌, 정비사업 업무지원 등
	장애인구분모집	1	
기술직 (5명)	토목	3	계획설계, 공공개발, 해외사업 업무지원 등
	건축	2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학력 및 연령	◇ 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임용예정일(2021.8.23.)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6.8.24. 이후 출생자) * 단, 제대군인 및 사회복지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응시연령	1985.8.24. 이후 출생자	1984.8.24. 이후 출생자	1983.8.24. 이후 출생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현역의 경우 단계별 전형 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지원제한	◇ 취업이 결정된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턴 근무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임용 후 적발 시 근로계약 해지			
결격사유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1)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 공인영어성적 자격 기준			
	사무직		기술직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토익 800점, NEW TEPS 309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500점, NEW TEPS 195점, 토플 56점 이상	토익 700점, NEW TEPS 264점, 토플 79점 이상	
	- 영어성적은 서류전형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적/부 기준으로만 활용			
	- 영어성적 인정범위 · 2019.7.22.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2021.7.21.)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상기 3가지 공인영어성적 외 다른 공인외국어성적은 불인정			
	- 공인영어성적은 텡스관리위원회(www.teps.or.kr)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영어성적 없이 지원 가능 * 고급자격증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붙임2)			
장애인 구분모집분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사무직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3. 가점 등 채용우대사항 (세부내용 불임3)

구 분			우대사항	확인방법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사무 일반모집분야에 한함)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해당 가점은 사무 일반모집분야 에만 적용 -사무 일반모집 외 분야에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후에 합격점수 및 순위 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더한 점수로 산정함. -모든 가산점은 매 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더 라도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는 자가 가산점 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합산함.
기사 자격증 소지자	토목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자격증 사본	
	건축	건축, 실내건축			
고급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토목 :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서류전형 면제 (입사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자격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의 경우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 한함)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TOPIK성적표(해당자)	

*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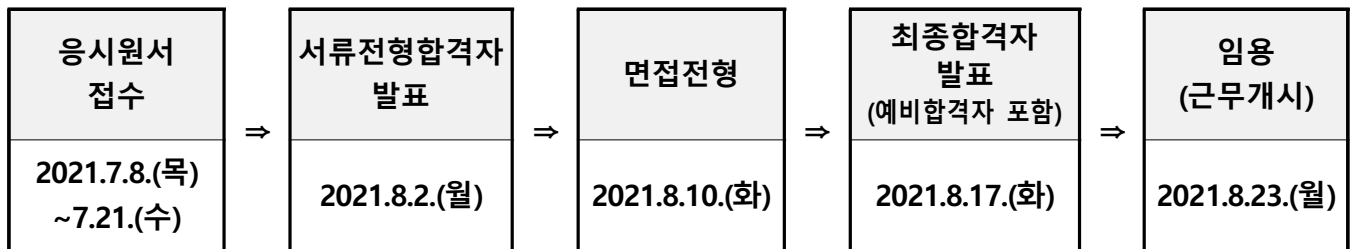
4.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조 건
계약기간	◇ 임용일(2021.8.23. 예정) ~ 2021.12.31.
보 수	◇ 월 224만원(식대 포함) *2021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 고급자격증 소지자가 유관업무 수행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별도지급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유연근무 가능) ◇ 월1회 유급휴가 부여
후생복지	◇ 4대 보험 및 단체보험
복 무	◇ 공사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취업시험 응시자에게는 특별휴가 부여(계약기간 내 최대 2일)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출장 처리

5.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

우대사항	주요 내용		
취업지원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정규직 채용 우대	◇ 아래 기간 동안 근속한 우수 인턴사원은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1회에 한하여 우대(단, 정규직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근무기간	우대사항	비고
	4개월 이상 근무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대 5% 가점	인턴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가점 차등 부여(가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2개월 이상 근무자	서류전형 면제	
	* 2021년 하반기 이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직무에 인턴 근무분야 직무가 없을 수 있고,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됨.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근무기간을 채우면 우대 조치 * 서류전형 면제 우대조건은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과락자에게는 적용 제외 *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에서 서류전형이 없어질 경우 서류전형 면제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되며, 필기시험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첫 시험에만 가점 적용함.		
	◇ 정규직 입사 시 인턴 근무기간 근무경력 합산인정(호봉산정 시 반영)		

6. 전형 일정



-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안내는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를 통해서 진행
- * 전형 일정은 공사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7. 전형 절차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길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1. 7. 8.(목) 16:00 ~ 7. 2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 ※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 접수 시 작성내용 : 응시원서,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제출 받을 예정(블라인드 채용 관련)

응시원서 상의 성명, 생일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의 성명, 생일이 한 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향후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전형

○ 전형내용

- 지원자격 적격여부(공인영어성적 등) 및 자기소개서 성실기재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
- 자기소개서 불성실기재 기준
 -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2개 이상 동일 반복
 -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50% 미만 기재
 - 동일단어(문항) 반복기재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블라인드 위배 및 공사이름 오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음

※ 자기소개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영어성적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면접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자기소개서 불성실기재자와 자기소개서 평가결과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과락자)는 제외하며, 합격인원은 배수 외 선발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 사무직 일반모집분야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기술직 중 기사자격증 소지자(5%)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 학교, 학업성적, 주소, 출생연도,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계정 기재 금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거나, 이를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 금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8. 2.(월), 10: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를 통해 발표, 면접전형 일시·장소 등 안내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자(증빙서류는 하단에 안내)

○ 일 자 : 2021. 8. 10.(화),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전형내용 : 직무관련 지식, 가치관 및 태도,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합격기준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정점의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최종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가산점 부여(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 사무직 일반모집분야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고급자격증 소지자(5%), 북한이탈주민(5%), 다문화가족(5%)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남성지원자에 한함, 병역사항 확인용)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하며, 가점대상자격증, 고급자격증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해당자에 한함)
-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외 대상서류는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미제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지원서 상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및 불합격 처리

공인영어성적,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으로, 허위의 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임용 후에도 당연 불합격 처분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17.(화), 10:00 이후**
 -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를 통해 발표, 신체검사 및 임용대상자 등록 등 안내
 - ※ 면접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합격기준
 - 면접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서류전형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각 점수는 가산점 제외 점수로 함.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자격증 등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 본 합격자와 동수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 및 예비합격순위 발표
 - 본 합격자의 임용 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결격사유조회결과 부적격 또는 본 합격자가 2021. 9. 30. 이전 퇴사할 경우 별도안내를 통하여 임용 예정

8.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 '이의신청'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9. 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응시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각 전형 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점수가산 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출처' 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하시길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종합격일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반환청구기간 내 요청 시 반환합니다.
- 장애인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 채용진행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sh.saramin.co.kr>) '질문하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1600-345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면접질문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2】 고급자격증 소지자

구 분	지 원 자 격
고급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붙임3】 채용우대 지원자격 세부내용

구 분	지 원 자 격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사무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기사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가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중 1) 자격증 - 건축 : 기사(건축, 실내건축 중 1) 자격증
고급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면제, 면접 가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u>변호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회계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u>법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u>공인노무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술사법』 제2조의 <u>기술사</u>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u>건축사</u> 자격을 취득한 자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및 면접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div style="float: right; 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10px;">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div>
다문화가족 (면접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면접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